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 가.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임
- 나. 고성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급액(안 제5조~제6조)
- 라. 지급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마. 바우처 사용 및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 바. 대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안 제17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3항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1) 기획감사담당관: 법제심사, 규제심사

2)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226호

가) 예고기간: : 2019. 9. 11. ~ 2019. 10.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불임

4. 본문: 불임과 같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고성군의 사회복지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군의원
3. 청소년 대상 기관, 단체의 관련자
4. 사용자, 가맹점 대표
5.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 단,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년도 바우처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7만원

제7조(지급 신청)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 증명사진 1매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3.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4.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9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5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1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고성군 내로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부터 제2조제3항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가맹점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6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7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8조(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등)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1 가맹점정보 (전산등록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 락 처	매장:	핸드폰:	
대 표 자 명		성별	

2. 계좌정보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3. 단말기정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매장 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꼭 기재해 주세요)

4. 결제방식(모두 신청 가능)

바우처 카드 , 쿼알코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_____ (서명)

고 성 군 수 귀 하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
 - 13세 ~ 15세: 월 5만 원/ 16세 ~ 18세: 월 7만 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18세의 청소년
- 사업규모 : 3,076명(2020년 기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구분	세입						
	군비	2,332,188	2,242,000	2,200,000	2,075,000	2,033,500	10,882,688
	세출						
	군비	2,332,188	2,242,000	2,200,000	2,075,000	2,033,500	10,882,688

다. 재원조달 방안: 2020년 ~ 2024년: 본예산(일반회계) 편성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재원 조달	의존재원	-	-	-	-	-	-
	자체재원	2,332,188	2,242,000	2,200,000	2,075,000	2,033,500	10,882,688
	기 타	-	-	-	-	-	-
	소 계	2,332,188	2,242,000	2,200,000	2,075,000	2,033,500	10,882,688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이 연 옥

□ 청소년기본법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